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0
----------	-------

발의연월일 : 2026. 7. 28.

발 의 자 : 이학영 · 한민수 · 임미애
이건태 · 김영배 · 박 정
박민규 · 전용기 · 김성범
윤준병 · 곽상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을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규칙은 그 대상을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로 정하고 있음.

이러한 보유 제한은 고래목 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태 보호를 위한 것이나, 국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 간 이관에 관한 명시적인 예외 규정이 없어 기존 보유동물을 사육환경이 더 적합한 시설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법 상 금지되는 보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한편,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증식하여 새로운 개체가 생기는 경우를 금지되는 보유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보유금지 규정의 취지와 달리 반복적인 개체 증식을 통하여 사실상 보유 개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생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개체 증식을 막기 위한 암수 분리사육 등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 시설 간 이관을 허용하는 한편, 보유 개체의 출산 또는 증식으로 생겨난 새로운 개체의 보유는 금지되는 보유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유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하는 종”을 “정하는 종(해당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생긴 개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2항에 따른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하여 국내의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터 그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관받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수족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세부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 금지 종의 증식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보유가 금지되는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이 출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식되어 새로운 개체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금지행위) ① (생 략)	제15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 음)
② 동물원 및 수족관은 관람 등의 목적으로 노출 시 스트레 스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질 병 발생 위험이 있는 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 부의 공동부령으로 <u>정하는 종</u> 을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 ----- <u>정하는 종</u> (<u>해당 종에 속하는 보유동물의</u> <u>출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u> <u>식되어 생긴 개체를 포함한다</u>) -----.
<u><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2항에 따른 종 에 속하는 보유동물의 사육환 경 개선, 동물복지 증진 또는 생태 보호를 위하여 <u>국내의 다</u> <u>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부</u> <u>터 그 보유동물을 이관받아 보</u> <u>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관받</u> <u>으려는 동물원은 기후에너지환</u> <u>경부장관의 승인을, 수족관은</u> <u>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미리</u>

<u><신 설></u>	<u>받아야 한다.</u> <u>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세부</u> <u>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u> <u>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u> <u>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u> <u>한다.</u>
--------------------	--